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2022년 10월 28일 (금)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장애포럼

지원 : 장애인개발원

공동주최 :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정준숙,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CPD)한국위원회(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공동성명

각국 정부는 존엄과 권리를 위한 장애인 투쟁의 결실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더이상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한 중요한 국제 규범임을 인식하며, 협약 당사국들 역시 이러한 선언에 동참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아태지역 45개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각 국가에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여섯 명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졌고, 이 비율은 고령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만성 질환, 교통사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에도¹⁾, 아태지역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사회이다. 아태지역에서 매해 발간되는 전자책 중 5%만이 시각장애인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아태지역 국가 수도 내 접근가능한 투표소는 59.8%, 접근가능한 공공건물은 66.5%에 불과하다²⁾.

2022년 8~9월간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세션에서 아태지역 10개 국가의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를 받은 국가들은 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견해 이행 계획을 발표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의 대상화와 권리 보장 실패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사국 정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 하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 하나. 국내 장애인정책, 제도, 관행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시킬 것
- 하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하나.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할 것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 하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하나. 정부의 협약 최종견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 하나. 국내 장애인 정책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
- 하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한 지역 내 국제 연대를 강화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의 역사적 결실이다. 이 소중한 협약이 더 이상 정부의 '인권적 장식품'으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각 국가에서, 아태지역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2016, Disability Fact Sheet, UN ESCAP

2) 2019, Disability at a glance-Investing in Accessi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2022년 10월 28일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노란들판(Corporation "Nodeul")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FootAc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장애인지역공동체(Jangjigong)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Korea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Korea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disability people with Brain lesion)
전국장애인부모연대(Korean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전국장애인이야학협의회(National Council of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y)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Nodeul Independent Living Centre for the Disabled)
열린네트워크(Open Network)
장애여성공감(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HIMPUNAN WANITA DISABILITAS INDONESIA
Japan National Assembly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National Grassroots Disability Organization (NGDO), Secretariat to the CRPD Platform- Bangladesh
Society of the Deaf and Sign Language Users (SDSL), Member, CRPD Platform- Banglad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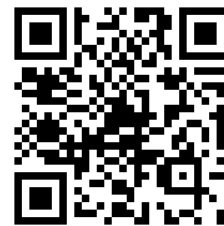
QR코드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자료집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버전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만족조 조사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성취도 조사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시간	주제	발제자
14:00-14:10	환영사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14:10	축사	내빈
1부 시민사회의 UN CRPD 정부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 좌장: 김미연 UN CRPD 부위원장		
14:10-14:25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국가별 주요 이슈 -이슈 관련 심의 대응 활동 -최종견해 평가 및 정부 이행 촉구 전략	한국(최한별 / 한국장애포럼)
14:25-14:40		일본(최영번 / 일본DPI)
14:40-14:55		방글라데시(레잘 시디크, 우마 하프사 모니 / CRPD-플랫폼 방글라데시)
14:55-15:10		인도네시아(레비타 알비 /말라니 로틴술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
15:10-15:20		공동성명서 낭독
2부 UN CRPD 한국 2,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좌장: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시간	주제	발제자
15:30-15:45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 (제 1조-15조)	게렐 돈도브도르지 UN CRPD위원
15:45-16:00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 (제16조-33조)	거트루드 페포아메 UN CRPD 위원
16:00-16:10	평등과 비차별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
16:10-16:20	사회참여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16:20-16:30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권리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16:30-16:40	소수 장애인 이슈	이수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16:40-16:50	한국 정부의 권고 이행 계획	보건복지부
16:50-17:20	Q&A	
17:20-17:30	환송사 및 폐회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목차

■ 환영사 ■

-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10

■ 축 사 ■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2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14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6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8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2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24
-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26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8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0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2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4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36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38

■ 1부 - 시민사회의 UN CRPD 정부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 한국(최한별 / 한국장애포럼).....41
 - 일본(최영번 / 일본DPI).....55
 - 방글라데시(레잘 시디크, 우마 하프사 모니 / CRPD-플랫폼 방글라데시)...71
 - 인도네시아(레비타 알비 / 말라니 로틴솔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75

■ 2부 - UN CRPD 한국 2,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제 1조-15조)
(게렐 돈도브도르지 UN CRPD 위원)77
-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제16조-33조)
(거트루드 페포아메 UN CRPD 위원)79
- 평등과 비차별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83
- 사회참여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87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권리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93
- 소수 장애인 이슈
(이수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97

환영사 및 축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윤종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공동주최로 뜻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태지역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9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2, 3차 심의결과가 담긴 최종견해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약 10여 년만에 받아든 대한민국 정부 2, 3차 최종견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 장애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위원회는 한국 정부 제1차 최종견해를 통해 UN CRPD에 위배되는 장애등급제, 시설 폐지 등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1차 때와 유사한 권고가 반복적으로 담긴 이번 최종견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전 세계인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헌법에도 준수 의무가 명시된 중대한 규범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들, 특히 아태지역 국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심의를 담당하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렐 돈도브도르지(Gerel Dondovdorj), 거트루드 페포아메(Gertrude Fefoame) 위원님을 모

시고 한국정부 2, 3차 심의 최종견해를 분석하고 이행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차 세션 기간 함께 심의를 진행한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국가 장애계와 함께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태지역 전반에서 UN CRPD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질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장애포럼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도종환입니다.
(사)한국장애포럼이 주관하고 국내 장애인 단체
들이 공동주최하는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
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종술 (사)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님을 비
롯해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
약」(이하 ‘권리협약’) 가입 이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모든 장애를 의학적 판정만으로 판단하는 장애등급제를 폐
지하고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등 권리협약의 이행과 달성에 최선을 다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8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79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
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는 여전히 제도적 차별이 남아있고,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위기 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사회로부
터 고립되었고, 코로나 대응 정책에서도 장애인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
가는 받았습니다.

향후 또 다른 질병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장애인들이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고 일
상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회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 인권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아시아 지역 장애인권 주요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유엔 장애인권 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권리협약 최종전해를 심층 분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12년 채택된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마지막 해인만큼,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들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리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되도록 당사자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은행나무도, 가을 산도, 모두 제 빛깔과 제 향기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깔과 향기로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는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에 입각한 장애 인권증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개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이행 수준은 여전히 낙제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탈시설과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계의 투쟁은 불법시위로 매도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복지의 영역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시설에 삶이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아갈 권리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탈시설을 지원할 예산은 한 줌조차 되지 않고 ‘장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이 대한민국 탈시설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사회적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직장에 통근할 수 있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으며, 문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불편함 없는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임종, 지인의 장례식처럼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할

상황에조차 이동권의 제약으로 접근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절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신념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 일관되게 추구해온 믿음입니다. 탈시설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지원주택과 장애인 이동권을 관장하는 국토위의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우선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장애포럼의 윤종술 상임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모든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또한 발제와 세션을 통해 중요한 의견을 공유해주실 UN CRPD와 NGO 보고서연대, 장애인법연구회, 보건복지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주요 국가별 장애인권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RPD) 심의 매커니즘에 참여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CRPD에 부합하는 한국 장애인 정책 이행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제자 여러분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 3차 최종견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에 귀 기울여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 가장 가까이 닿아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오늘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모두가 존재 그 자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KDF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 해주신 한국장애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공유하고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2008년에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 권리보장과 평등한 사회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이고 의무적인 복지국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국립대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없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원과 특수교육지원인력의 확충 역시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향상, 이해가 담긴 의료지원, 사회적 참여, 이동권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꾸준히 고민해 나가고,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장애인

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국제 장애인권리조약에 합치되는 복지국가의 올바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더 앞장 서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비장애인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가장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비장애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도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장애인인권향상과 복지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바르고 타당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해안이 오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장애포럼과 장애인단체들에 대해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권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장애인 가구 중 35.2%가 소득분위별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에 속해 있고, 장애인 빈곤율의 경우 42.2%나 됩니다.



국회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정책도 더디기만 합니다. OECD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은 1.9%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0.6%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및 질병 현금 급여의 공적지출 비율은 GDP 대비 0.3%로, OECD 평균 1.6%와 비교하면 5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부재는 인권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정당한 외침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가정의 비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2, 3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가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미뤄둔 숙제의 해설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권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듯이,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고 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인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시설이 아닌 곳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권리보장에 관한 권고가 내려졌다는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따라 누구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탈시설 로드맵을 재수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시설 폐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심의 중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절의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기후 정의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심의 이후 장애등급제 개편,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장애등급제가 의료적 기준의 장애 등록체계 내에서만 적용되는 점과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
춘숙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종술 상임대표
님을 비롯한 한국장애포럼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먼 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렐 돈도브도르지
(Gerel Dondovdorj), 거트루드 페포아메(Gertrude Fefoame)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우리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두 번째 심의가
있었던 해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포괄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서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세계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뒤로, 어느덧 14년
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장애포럼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협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의 대응에 노력해 주셨습니
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
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방글라데시, 인
도네시아 장애계의 협약 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

다. 오늘 컨퍼런스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우리 장애인 정책의 현실을 들여보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하여 함께해주신 모든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해주신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국회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한 권리들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19년 3월 제 2.3차 정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 9월에 걸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9일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는 2014년 발표된 1차 최종견해 권고와 비슷한 내용이 담겼으며, 위원회는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에 협약 내용을 실효성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이번 최종견해를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협약 기준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심의를 담당하신 게렐 돈도브도르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께서 직접 와주셨으며, 공동 심의 담당관이신 거트루트 페포아메 위원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2 국제장애인권 컨퍼런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한국장애포럼의 국제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 심의가 진행된 만큼, 컨퍼런스
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우리의 방
향과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자
리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올해 8월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심의에 참여하면서 한국이 유엔장애
인권리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심도 깊은 이
해와 공고한 단결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
다.

국가 의사결정과정 및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
으며,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협약의 국가적 이행을 증진하는 소중
한 동력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
아 장애계의 심의 대응 과정을 이해하고 각국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앞으
로 더 큰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 심의 담당관으로 노력을 다해주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게
렐 돈도브도르지 위원님, 그리고 거트루드 페포아메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분을 비롯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에 제시한 견해 및 권고들을 잘 확인하고, 바람직한 이행 방향을 확인하는

뜻 깊은 컨퍼런스가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맺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역사회에서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여 이행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저 역시 국회에서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강선우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관을 맡아 애써주신 한국장애포럼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장애인권 활동가 여러분께서는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국내법 제정과 개정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심의회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태지역 10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각 국가별 최종견해 역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를 토대로 아태지역 내 주요 국가별 장애인권의 이슈를 서로 공유하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 그간 애써왔던 시민사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덧붙여 우리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 견해 역시 꼼꼼히 분석될 예정인데, 부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더욱 부합하는 장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신 모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신 한분 한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넘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장애포럼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주최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에게 함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제2·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교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장애인권 사안들에 대해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처럼 국제적 인권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역차별법’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는 ‘비문명적’ 시위로, 장애인들의 탈시설은 ‘위법·인권침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풍파가 이처럼 거세게 몰아친 적이 있나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애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사안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살피는 이번 컨퍼런스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권 이슈들이 성숙하게 논의되고, 우리사

회가 장애인들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과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한국장애포럼과 공동 주최 해주신 관계자분들, 선배,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김미연 부위원장님과 한국 정부 최종 견해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시며 친히 현장 방문 해주신 게텔 의원님, 온라인 참석 해주신 거투르트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 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부합하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 국제권리장전으로 전 세계에서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비준한 국가입니다.

지난 8월, 한국장애포럼 등 국내 장애인 단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원활한 협약 이행 여부를 위한 심의 과정에 참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과정에서 사회 영역 전반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장애계의 권리에산 투쟁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향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가 UN의 권고 사항을 꼼꼼히 짚고, 이행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선진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가 열리기까지 애써주신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해 오늘 행사를 함께 주최해주신 시민사회계의 연대체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많은 분들과 멀리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지난 여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세션 이후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탈시설 가이드라인 정신에 부합하도록 탈시설 로드맵을 재수립하는 한편 이를 성실히 이행할지를 지켜보는 것,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 장애인 정책에 있어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등 이행하기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앞으로의 이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아태지역 국가들의 장애인권 이슈와 관련 대응 및 활동을 듣는 기회는 물론 최종견해 작성을 담당할 거트루드 페포아메, 게렐 돈도브도르지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그 배경과 이행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국가 간 네트워킹과 연대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논의된 내용이 우리 장애인 정책

에 십분 반영되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며 계속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안전과 존엄의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는 국가를 막론하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했던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격리수용되어 살아가는 시설 장애인이 가장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장애계는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했고, 한국의 현장 활동가들 역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긴급 탈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신 현장 활동가들께서 한국 사회 장애인들의 불평등과 정부의 이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UN의 최종견해는 1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우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탈시설’ 요구와 같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을 통해 시민단체 등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협약 이행 및 감독, 그리고 시민단체의 심의 대응 활동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국의 사례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큰 자산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논의 과정에서 장애여성과 소수 장애인, 그리고 약소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협약의 이행 점검 역시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한국 장애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UN장애인권리협약 완전한 이행의 과제를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 대한 UN의 최종견해를 분석해 ‘탈시설’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신 장애계와 주관해주신 한국장애포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아태지역 각국의 발표자분들과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NGO보고서연대와 장애인법연구회,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다양한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장애포럼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전히 장애인들이 모욕을 견뎌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 머리를 깎으며 싸우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는 수십억을 쓰지만 장애인의 권리에선 있던 예산도 깎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욱 후퇴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인 ‘UN장애인권리협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올해 여름 대한민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 자리가 8년 만에 열렸고, 지난 달 유엔 장애인 권리위의 최종 견해가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UN 앞에서 불리한 것을 숨기고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며 대한민국의 민낯을 숨기려 애썼습니다만, 79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UN의 최종 견해는 정부의 시도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협약을 마땅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UN의 경고는 장애인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 역시 한국정부에 대한 UN의 2,3차 권고 심의사항을 살피고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가를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UN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힘쓰겠습니다. ‘자유’와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희망과 변화의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부] 시민사회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한국 (최한별 / 한국장애포럼)

1 부

한국 (최한별 / 한국장애포럼)

한국 시민사회의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한국 주요 장애 의제들

탈시설

Deinstitutionalisation

장애인/가족 사망

Murder-suicide cases of PWDs
and their family

탈시설

- 시설 수용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29,086명(1539곳, 2021년), 정신장애인요양시설 8,828명(1,131곳, 2020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자립지원(탈시설) 로드맵
 - 2021년 로드맵 : 소규모화된 시설로의 전환 계획 중심
 -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후견인)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여부 결정→ 로드맵이 완료되는 시점(2041년)에도 2,193명 현재 시설에 거주/ 10,517명은 소규모 시설 거주
 -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노숙인을 포함하지 않고 근거 법령 및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포괄적이고 개별적 자립지원 예산이 없는 3년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20년 탈시설 로드맵을 계획
- 예산이 진실을 말한다(Money tells the truth)
 - 2021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에 6,224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는 탈시설 예산 21억 원보다 300배가 넘는 비용

탈시설

- 코로나19와 시설
 - 한국 내 484개 시설 전체 거주인 중 35.6%인 9,904명의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100명 이상 거주시설 34개에서는 확진자 비율이 48.8%(2,428명)으로 특히 높았다. 전체 인구 확진자 비율 25.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국내 장애계는 '긴급탈시설' 도입 촉구→ 법 개정안도 국회 상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시설 대상 조치는 '코호트 격리'조치에 머물고 있음



COVID-19 and 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 / KDF

장애인-가족의 살인 후 자살 사건

- “내 아이보다 딱 하루 더 사는게 소원이예요”
 - 장애인의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 아시아 국가의 특징인 가족중심 문화?
 - 장애인, 특히 학령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 교육, 주거, 소득, 낮 활동, 직업 등
- ⇒ 2012년-2022년, 발달장애인 및/또는 자폐성장장애인과 가족의 살인-자살 사건 최소 40건 이상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 통계나 대책 전무

한국 사회는 장애 '시민'의 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함

-교육, 주거, 노동, 이동, 돌봄...

→ 결국, 장애인은 집에서 죽거나 시설로 추방당함(outcasted)

UN CRPD,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도구

심의 대응 보고서 작성

- KDF, NGO보고서연대, 장애인법연구회 등 다양한 장애/인권 시민사회에서 2,3차 심의 대응 보고서 12종 제출
- 보고서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IDA등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 진행

The Korean DPO and NGO Coali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2 Aug 2022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6 Jul 2022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ttee on Labor Rights of Republic of Korea (SADDC-CLR)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5 Jul 2022
Korean Autistic Peoples Organisation-esta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Additional informa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9 Jul 2022
Korean Disability Forum (KDF)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9 Jul 2022
Duron-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et al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2 Jul 2022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06 Jul 2022
Korea Associ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01 Jul 2022
Korea Disability Law Associa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30 Jun 2022

심의 대응 보고서 작성

- 시민사회 보고서 권고안(탈시설)

11조

- 한국정부는 UN CRPD 및 일반논평 등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긴급탈시설 원칙을 도입할 것

19조

- 1) 한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원칙에 맞게 (1) 시설 소규모화, 전원조치, 신규 입소 및 신규설치 등 모든 종류의 시설화 금지 (2) 법적능력회복 및 의사소통지원 등을 포함하여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정하고,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제정할 것.
- 2) 한국 정부는 개인별 서비스(주거, 활동지원 등) 수립 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것

심의 대응 보고서 작성

- 시민사회 보고서 권고안(가족지원)

23조

- 1)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할 것.
-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낮 활동, 직업, 소득, 주거 등)

NGO 비공개 면담 준비

- Private Briefing: 시민단체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간에 진행되는 비공개 면담. 당사자가 평가하는 국가 현황을 현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짧은 시간 효과적 활용 필요→사전 회의 통해 (1) 발언자 최소화 및 발언 시간 준수 (2) 위원 질의/응답 시간 충분한 확보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현황 / 장애인 사회참여(이동, 노동, 교육, 가족지원 포괄) 현황
- 대표적 통계,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협약에 기반한 평가, 정부가 답변을 안했거나, 잘못했거나, 왜곡한 내용, 대표적 사례 중심 작성
- 시민사회 자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 분량 점검 및 수정(한국, 제네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동, 노동, 교육,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위원들과의 만남

- 한국 상황에 대한 추가적 설명
- 추가 정보 이메일 발송, 사전 약속 또는 현장 만남
- 탈시설: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중요성이 공유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인지
전략→정부가 주된 답변 골자로 활용하는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 강조
- 장애인과 가족의 살인-자살 사건: 새로운 케이스(기존 질의목록에서 누락, 한국 특수 사건)
전략→위원 개개인과의 접촉 최대한 늘려서 사안을 소개하고 맥락을 설명



People with disability want mobility, education, labor, and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Mobility Rights
The government's four-year plan to promote transport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has never met its target.

PA Services
Comprehensive assessment on soc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which decides the amou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does not provide enough amount of services even for those who need 24 hour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Deinstitutionalization
1,539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total
29,000 Residents in total
Average Period of Residence 18.5 years
4.7 people per one room

The government avoids the use of de-institutionalization terms and is passive in establishing budget, and avoids to meet the Act on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have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RPD's recommend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Korean disability movement.

Korean government said "There 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need the institutions. They have right to choose institutions." claiming persons of a few people with disability's parents, demanding individual choice and control across all areas of their lives.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Korean government's policy which limit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ertain residential condition and does not fully guarantee supports in community.

We have the committee to recommend Article 19 to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guarantees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in which every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OUR HISTORY IS THE DISABILITY PRIDE!

2001	2003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uggle for Mobility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Struggle for Treatment of Act for Handl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uggle for Educatio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act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ople with Disability (2005.10) Strugg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olicy (2007)
2010	2012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uggle for Disability Rate Judge Center under National Person Service Enactment of Act on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0.06) Struggle for Treat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uggle for Strengthenment of Employment relation to abolis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and the Support Daily System (2012.08 - 2017.08) Struggle for ensuring welfare budge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2020 average) (20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uggle for enactment of Act on De-institutionalization Struggle for Systemic Support Housing Program Act on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0.12)

Disability Agent Disability Discrimination, National Council on Program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y, Korea Parents Network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 Society for Human Rights of Disability Justice for Korea, Korea Council of Career for Independent Living have fought to secure human rights and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We practice co-existence and human centered values, not competition and efficiency-oriented society.

We are fighting for the rights to create a livable for independent living community, where persons with disability can live their own lives.

Through the progressive disability movement, we are a disability, with all the marginalized in the world.

Together, we have changed the world by ending against discrimination.

결과

-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 탈시설 로드맵에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고 있는지, 정신장애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이 로드맵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아동 탈시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등
 -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음에 대한 환기,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이후 자살하는 사건은 분명히 사회적 사건임을 명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관련 수사 계획이 있는지, 장애아동 가족들에 대한 어떤 조치와 계획이 있는지-그래서 어떻게 가족들이 더이상 죽거나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결과

- 심의장에서 정부의 약속
 - “우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장애인 정책 책임자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발달장애인 당사자께서 충분히 체감하실만한 서비스 아직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3차 최종견해(2022.9.9.)

탈시설- 11조(위기상황)

25.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팬데믹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긴급한 정보와 장비에 접근하는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표한 장애 포괄적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브리핑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b) 긴급상황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2, 3차 최종견해(2022.9.9.)

탈시설 - 19조(탈시설 자립생활)

41.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 부족,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 부족;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에 대한 미약한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그리고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의 부족.

2, 3차 최종견해(2022.9.9.)

가족에 대한 지원-10조(생명권)

21. 위원회는 다음을 깊이 우려한다:

- (a) 자폐당사자, 정신장애인 높은 자살률과 실종률, 더불어서 부모가 자살 직전에 장애아동을 살해하는 사례;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자폐성장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하며, 장애인의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 국가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 채택하고 이행할 것:

2, 3차 최종견해(2022.9.9.)

가족에 대한 지원- 23조(가족에 대한 존중)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 부족.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을 채택할 것.

최종건해 이후, 한국은

탈시설

- 백래시가 거세지고 있음
-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로드맵이 협약에 부합하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보다도 후퇴하지 않을 것인가?

가족 지원

- 협약 심의 과정을 통해 더욱 부각되기 시작
- 국회 차원의 위원회 결성 but 입법 이후 이행이 관건

우리의 전략

1. 최종건해 알리기
 - 투쟁과 기자회견,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입법활동 등.
1. 최종건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 10년 후에나 예정된 4,5,6차 심의→주기적 환기 필요
 - 권고 이행 지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 우선 오늘 모인 국가끼리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정기적으로 각 국가 상황을 확인

[1 부] 시민사회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일본 (최영번 / 일본 DPI)

1 부

일본 (최영번 / 일본 DPI)

2022 . 10.28 KDF

KDF Korean Disability Forum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JAPAN NATIONAL ASSEMBLY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SAI, TAKANORI

1. 일본 내 주요 장애 이슈
2. 해당 이슈 관련 UN CRPD 심의과정 내 시민사회의 역할
3.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주요 이슈

3

일본 장애인 현황(2022장애인백서)

(1) 대략적인 숫자

4.36 만 명의 신체 장애 (신체장애아동 포함), 지적장애 1,094,000 명 (지적장애아동 포함) 및 4,193,000 명의 정신장애인.

인구의 7.6 %가 장애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 환자 수

(2) 시설·입원 현황 및 입원 현황

신체 장애인을위한 시설에 입원 한 사람들의 수는 약 73,000 명, 그 중 1.7 %가 시설입소.

지적장애인 수는 약 120,000 명, 그 중 12.1 %가 시설 생활.

정신 질환을 앓고있는 입원 환자의 수는 약 270,000 명이며 정신 장애 환자의 7.2 %가 입원.

주요 이슈

- ◆ 차별철폐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법 범위 확대, 차별유형 확대 등)
 교통, 건물, 정보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추진(무장애 교통 및 건물, 웹 접근성, 수화 언어법재정 등)(제,1,9, 20, 21조 관련)
 성인후견인제도(제12조)
 사법 접근성(제13조)
 강제입원제도(제14조 관련)
 탈시설 및 탈병원 강력한 이행(제19조 관련)
 통합교육제도의 실현(제24조 관련)
 독립된 감시기관 및 인권기구 설립(제33조 등)

5

제19조 탈시/설병원(14조 강제입원 포함) 현황

- ❓ 입소 시설(생활시설)
 - ◆ 약 70,000 명의 신체장애인과 120,000 명의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 전국적으로 20,000 명 이상의 시설입소 대기자.
 정부의 장애인복지계획의 지역 이행 계획은 형식적이며 탈제도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 정신병원
 - ◆ 전 세계 정신과 병상의 20~25%가 일본에 있을(세계최다).평균입원 기간은 270일(세계1위)
 270,000 명이 입원 . 정신장애인이 동의하에 입원 할 수 있는 자의 입원은 자발적인 퇴원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약 172,000 명이 1 년 이상 입원했으며 그 중 적어도 1,773 명이 50 년 이상 입원했습니다 (2018).
 비자의 입원에 관해서 약180,000 명이 의료보호입원(2018),약 1,500 명이 조치입원(2018 년 말 기준).

6

제 24 조 통합교육 현황

❓ 권리협약의 통합교육 방향과는 역행

❓ 1979년 이후 법제도에 의해 분리된 사회. 포괄적인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 의무 교육 과정의 총 학생 수는 9.89 백만으로 감소
- 2020 년 현재,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에 제적한 학생은 약 144,800 명으로 2010 년에 비해 약 1.2 배 증가했으며, 특별지원학급에 등록된 장애학생 수는 약 302,500 명으로 2010 년에 비해 약 2.1 배 증가.
일반학급 제적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약 134,200 명이 통급학급(SPECIAL SUPPORT SERVICES IN RESOURCE ROOMS)을 이용 (2009 년보다 2.5배 증가).
- 장애없는 학생과 분리 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7

해당 이슈 관련 UN CRPD 심의과정 내 시민사회의 역할

8

JDF(일본장애퍼럼) 소개

- 2002년, AP 장애인10년 마지막 해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DPI 세계대회 샤프로를 포함한 장애 관련 세 계 국제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됨)은 궤리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장애인 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기운이 고조.

일본 장애인 포럼 (JDF), 2004 년 10 월 설립.

다음과 같은 13개 장애관련 전국조직으로 구성. 일본신체장애인단체연합회, 일본 시각 장애인 단체 연합회, 일본 농하인 연맹, 일본장애인협의회, **DPI 일본회의**, 전국 육성회(INCLUSION INTERNATIONAL JAPAN), 척수손상자 연합, 전국 정신건강복지회연맹, 전국난청자/중도실청자단체연합회,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일본 장애인재활협회, 전국 "정신병자 " 그룹, 전국맹농자 (BLIND DEAF)협회

대표는 아베 가즈히코 일본신체장애인단체연합 회장.

JDF의 활동

- ② 2014년 1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2015 ~ 2016 : 내각부 장애정책위원회가 첫 번째 정부 보고서에 포함될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요약합니다.
2016년 6월: 일본 정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첫 번째 정부보고서 제출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1711085.PDF](https://www.mofa.go.jp/mofaj/FILES/0001711085.PDF)
- 2019년 6월: **LOIS 을 위한 NGO(병렬)보고서**를 제출.
2019 년9월: 제네바에서 LOIS PRE WORKING GROUP에서 로비활동. 장애권리위원회가 LOIS을 일본정부에 보냄
2021년3월: **최종견해를 위한 NGO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② 2022년5월:일본정부가 LOIS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로 제출함에 따라 JDF도 **일본정부 답변에 대한 의견**으로서 3번째보고서 제출
- ② 2022年8月22日/23日; 일본정부 심사(CONSTRUCTIVE DIALOGUE), 그 전후에 제네바에서 로비 활동
- ② 2022년9월9일 : 최종견해 공표

LOIS 작성을 위한 사전 Working group 로비 활동(2019년9월)



2022년8월, 100명 넘는 NGO로비단



최종견해

최종견해 특징

- ☐ 긍정적 측면은 17(많은 편). 권고 사항의 내용은 상세하고 방대. 총 93 가지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12 은 촉구(URGE) , 81은 권고(RECOMMENDATION(. 제19조와 제24조는 모두 강한 언어인 URGE. 제14조(신체의 자유)는 권고와 요구(요청). 후속 조치 (71 단락)는 또한 제 19 조와 제 24 조의 "강력한 요청"을 구체적으로 언급. 최우선 순위 항목. JDF의 병렬 보고서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내용 소개

- ☐ 제5조: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철폐법 개정 등
 - 제6조 및 그 외 : 장애인 여성
 - 제 11 조 : 방재
 - 제 12 조 : 법적 능력 / 성년후견제 폐지
 - 제 14 조 : 강제 입원의 폐지
 - 제15조~제17조: 학대 금지, 우생학 재판
 - 제 19 조 : 탈시설,탈병원(14조 포함)
 - 제 24 조 : 통합교육
- ☐ 제27조
 - 제 33 조 : 국내 감시/독립된 인권기관 설치

15

평등과 무차별 (第5条)

14. 위원회는 평등과 무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2018)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장애인 차별철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장애,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조건에 근거한 여러 가지 교차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라 합리적배려의 거부를 포함해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 (b) 사적 및 공공 영역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합리적배려가 제공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 피해자를 위한 사법 및 행정 절차를 포함한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구제책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제공한다.

16

법 앞에 평등한 인정(제12조)

28. 위원회는 법 앞에서 동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 논평 제 1 호 (2014)를 상기하고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대체적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평등권이 법 앞에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차별적 법률조항 및 정책을 폐지하기 위하여 민법을 개정한다.
 - (b)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수준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그들의 자율성, 의지 및 선택을 존중하는 지지적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17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14조)

32. 협약(2015) 제14조에 관한 지침과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지침 (A/HRC/40/54/ADD.1)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장애인의 강제 입원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실제 장애 또는 위험으로 인식되는 근거로 장애인의 강제 입원에 의한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모든 법적 조항을 폐지한다.
인식되거나 실제 장애를 이유로 합의되지 않은 정신과 치료를 정당화하는 모든 법적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동의하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품질 및 의료 표준을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장애가 있거나 없는 모든 사람의 자발적으로 동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옹호, 법률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 안전 장치를 보장한다.

18

19条

[?] 장애인 권리위원회 회의에서 "탈제도화 지침"발표가 제정되었습니다.
 제19조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건설적 대화(심의)에서 조나스 라스가스와 로버트 마틴, 사올라크 톱카이, 아말리아 가미오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은 주거 시설과 병원에서의 전환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질문을 던졌다.
 질문 중에는 장애인 종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움직임에 따른 지역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결론 관찰 (권고안 (D))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양과 내용 또한 상당했으며, 제 24 조와 함께 강한 " 강력한 요청".

19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과 포용(제19조)

42. 지역 사회에서의 독립적 인 생활과 포용에 관한 일반 논평 제 5 호 (2017) 및 탈시설에 관한 지침 (2022)을 참조하여위원회는 당사국에 촉구한다.

- (a)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기** 위해서 예산 배분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지원으로 전환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함**.
- (b) **정신과병원에 입원 한 장애인의 모든 사례를 검토하고, 무기한 입원을 중단하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독립적 인 삶을 육성함.
 장애인이 거주지, 지역 사회에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룹 홈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생활형태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0

- D)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틀 및 국가 전략과 시한적 벤치마크, 인적 자원, 기술 및 기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율권 인정 및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기관에서 지역 사회에서 자립한 생활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이행을 시작함.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 집단 시설 이외의 자립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주택, 개인 지원, 사용자 주도 예산 및 지역 사회 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됨.
- 장애인 사회에서 장벽과 필요한 지원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포함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원 및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한 기존 평가 계획을 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인권 모델에 기반하도록 보장함.

한일 NGO 교류의 주 제도 '탈시설'



24条

❓ 교육은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JDF 외에도 포괄적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로비 그룹도 있습니다. 병렬 보고서의 수는 정신 장애와 함께 분야별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우려와 권장 사항 제 19 조 및 권고보다 강력한 "강력한 요청"

23

教育 (24条)

52. 포괄적인 교육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4, 목표 4.5 및 지표 4 (A)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 4 호 (2016)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분리된 특수 교육을 끝내기 위해,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 법률 및 행정 조치에서 특정 목표, 기간 및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필요한 합리적배려와 개별화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양질의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함.
- (b) 모든 장애 아동이 주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반학교가 장애 아동의 입학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학거부 금지조항" 및 정책을 수립하고, 특수 학급과 관련된 문무과학장관 통지를 철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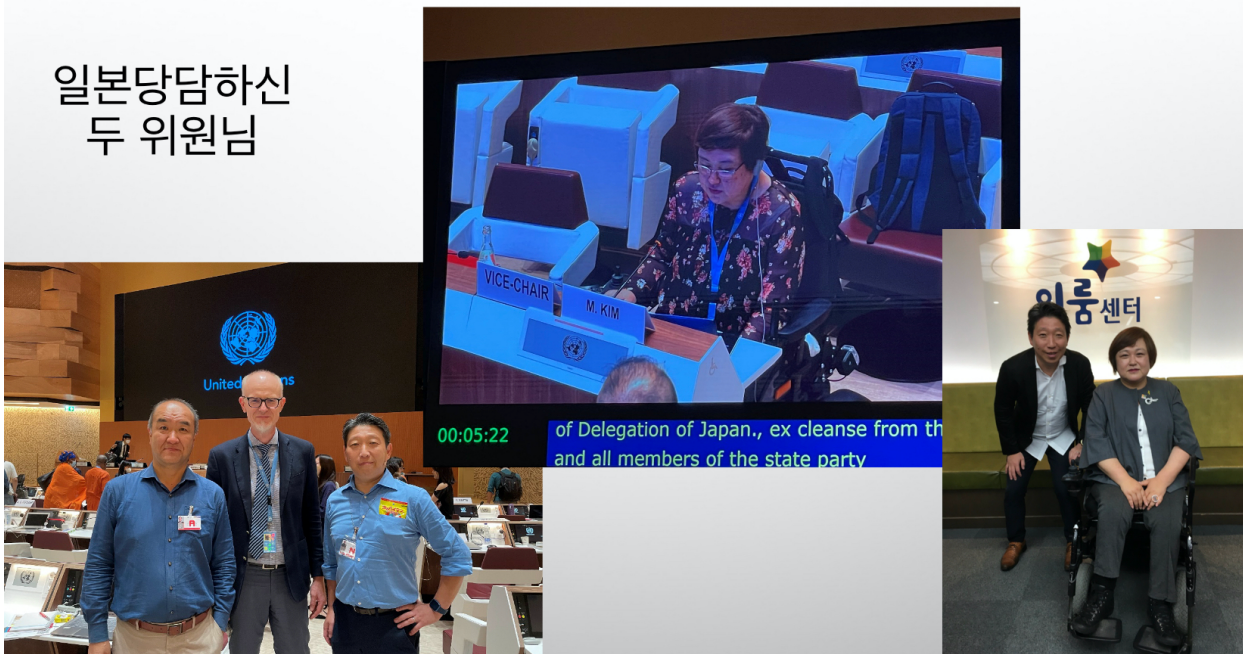
24

教育 (24条)

- C)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이 개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교육을 보장 할 수있는 합리적배려를 보장 함
- D) 통합교육에서 주류 및 비 교수 교사의 훈련을 보장하고 장애인을위한 인권 모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E) 점자, 쉬운 읽기, 청각 장애 아동을위한 수화 교육, 포괄적 인 교육 환경에서 청각 장애인 문화 진흥, 농맹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접근과 같은 정상적인 교육 환경에서 확장 및 대체 커뮤니케이션 모드 및 방법의 사용을 보장함.
- F) 대학 입학 시험 및 학습 과정과 같은 고등 교육에서 장애가있는 학생들의 장벽을 다루는 국가 종합 정책을 개발함.

25

일본담당하신 두 위원님



이제 시작 ! 다음 싸움에 연대합시다 !



27

감사합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アクセス先は

DPI

[HTTP://WWW.DPI-JAPAN.ORG/](http://www.dpi-japan.org/)

崔です↓

SAI@DPI-JAPAN.ORG

[1 부] 시민사회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방글라데시 (레잘 시디크, 우마 하프사 모니 / CRPD-플랫폼 방글라데시)

1 부

방글라데시 (레잘 시디크, 우마 하프사 모니 / CRPD-플랫폼 방글라데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에서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다중장애를 가진 모하마드 레잘 울 카림 시디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장애인권 역량강화부서와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CRPD 플랫폼 방글라데시가 제출한 대체 보고서 기고자로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9년동안 대체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조율을 했으며, 제네바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열린 11차 실무 그룹회의와 CRPD 위원회 제 27차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OPD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 우마 하프사 모니 에 이렇게 의미있는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장애인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CRPD 대체보고서를 위해 저희가 했던 업무에 대한 배경과 저희가 했던 업무에 대해 시간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하프사가 방글라데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2022년 9월에 CRPD위원회가 발행한 종합 견해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 풀뿌리 장애 기관(NGDO)은 106개 장애인관련 단체와 750개 자조그룹(SHGs)으로 구성된 포괄적 기관입니다. 2013년 부터, NGDO는 장애여성 국가위원회(NCDW) 그리고 방글라데시 법률 구제 및 서비스 신탁(BLAST)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국가연합프로젝트(NCP)를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2013년 부터 2016년 까지는 장애인리펀드(DRF)의 지원을 받아 UNCRPD 병행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NCP는 2015년에 CRPD에서 선택된 8개 조항인 제 6,9,13,16,24,25,27, 및 29조에 중점을 둔 이해관계자/대체 현황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5월 2일 전에 제출되었어야 했던 CRPD 실행 현황 보고서를 2017년 4월에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NCP는 2018년 1월 OPD, NGO, 및 INGO등을 함께 어우르는 더욱 확대된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CRPD 플랫폼-방글라데시로 정했습니다. NGDO는 이 플랫폼의 사무국 역할을 했습니다. IDA와 BAST는 기술적 지원을 했습니다. CRPD 플랫폼-방글라데시의 이름으로 2019년 2월 CRPD 위원회에 대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1차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LOI의 기틀 마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CRPD 위원회에서 쟁점 목록을 발행했고, 우리는 이에 대해 2020년 2월에 대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보고서에 대해 2020년 3월과 2021년 8월에 CRPD 검토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검토 세션이 연기되었습니다. 플랫폼은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2022년 개정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위원회가 2022년 8월 제 27차 회의에서 방글라데시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병행 보고서와 2022년 8월 25일 CRPD에 개별 브리핑 중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

글라데시 장애인의 상황과 이들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방글라데시에서는 장애인 권리 및 보호법(RPPDA) 2013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정 및 행동을 위해 고등 법원까지 가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로 인해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본 법상 구성된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위원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헌법, 계약법, 부동산 양도법, 선거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법들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동등한 법적 역량을 제한하는 법들이었습니다. 신경발달장애인 보호법은 신경발달장애인에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거의 부재하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접근성 보장, 합리적 조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옹호단체와 의미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예산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반논평 7과 UNDIS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CRPD에 따른 예산을 도입하고, 연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RPPDA와 2019년의 국가 장애행동계획의 일정에 명시된 활동들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 기관 내 관계자들의 태도와 행동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장애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발행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쇄본과 전자문서 형태로 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단순 문자, 그림형식과 같은 다른 접근가능한 형태로 법적 정보를 배포하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ICT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 배포 정책 역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TV나 다른 기타 미디어 역시 시각장애인이 겪는 장벽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수어를 도입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정보에 대한 권리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자 역시 일관되지 않아 소통의 공식적인 표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 동료 우마 하프사가 소외계층 장애인에 대한 문제와 우려사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마 하프사 모니입니다. 청각장애인 수어사용자 학회 회원으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관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시각, 청각, 담화,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구나 교육 장비들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체장애인들은 인프라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걸 공개하면 더 큰 차별에 직면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공개했을 때는 대학에 불합격 했지만, 공개 하지 않았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들은 보건 서비스, 교육, 고용, 법적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다른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들의 상황, 특히, 장애여성, 장애 원주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 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재합니다. 최근 실시된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의 1.4%가 장애인이라고 했지만, 가계수입설문조사에서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시설화의 일반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주사 및 의료적 치료가 본인들의 동의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은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동료 레자울 카림 시디퀴가 CRPD 위원회에서 발행한 종합견해 보고서에 대한 저희의 분석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종합견해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시행된 법적 정책적 대책들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70개 이상의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및 증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한센병 환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모든 법과 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 및 보호법 2013을 검토하여 장애 여성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협약에 상응하도록 법, 정책,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관련 기관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효과적인 참여와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이러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당사국 정부 내에서 중점사항을 명확히 하고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이와 더불어, 파리원칙의 의무사항에 따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협약의 이행상황을 개선시키고 감독하는 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및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2029년 12월 30일까지 2차에서 6차 까지의 정기 보고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현재 종합 견해에 언급된 권고안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단순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앞에서 언급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즉, 이러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일정으로 정해진 기한보다 최소 1년 앞서 쟁점 목록을 준비하게 되며, 당사국은 이러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서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 시민사회 UN CRPD 심의 대응 경험과 과제
국가별 주요 장애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본 심의 대응 활동 및 향후 과제

인도네시아(레비타 알비 / 말라니 로틴솔루, 인도네시아 장애여성연합)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제 1조-15조)

게렐 돈도브도르지 UN CRPD 위원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한국 최종견해 작성 배경 및 이행 지침(제 16조-33조)

거트루드 페포아메 UN CRPD 위원

2 부

주요 쟁점 보고 (제16조 ~ 제33조)

거트루드 페포아메 UN CRPD 위원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시고 저와 게렐(Gerel)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저는 한국 정부와 장애인단체, 기타 이해당사자가 힘을 모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실무그룹은 최종견해 전반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각 이행 단계 별로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는 누구이고,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포함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제16조부터 33조까지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을 제안합니다.

제16조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문제.

결코 이 문제가 지속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안팎에서 행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아동 당사자와 아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자, 장애 관련 쟁점을 다루는 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행 일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치료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관련 절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보고 전 쟁점목록(LoIPR)에 추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한국에는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장애여성 및 장애여아의 강제불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강제불임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사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내역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은 장애인 단체, 특히 장애여성 및 장애여아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확인, 조사, 추적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례를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제불임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9조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

최종견해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되고 있는 시설화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한국은 긴급히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로드맵이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가 포함하고 있는지, 장애인권리협약과 지난 9월 위원회가 채택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탈시설화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22조

동의 없는 추적장치의 발부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없이 자폐성 장애인과 심리사회적장애인 및/또는 지적장애인에게 추적장치가 발부되어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증예방정책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4조

특수교육의 지속

특수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모든 교육 수준의 주류교육에서 포용의 문화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통합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긴급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교육 요건 및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인권 기반의 개별적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반드시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제27조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분리되는 장애인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방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해당 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포용적 고용정책을 도입하고 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의 업무 및 고용, 그리고 포용적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장려합니다.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개방노동시장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할당제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3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장애 정책을 조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상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횟수를 늘려 장애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원칙(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쟁점 중 일부만을 강조했으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복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종건해에 제시된 위원회의 권고사항 전체를 이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장애인 모두의 삶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평등과 비차별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관리옹호센터 센터장

2 부

CRPD 제5조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방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센터장

1. CRPD 최종견해 내용

11.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장애인 및 HIV 감염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 합리적 조정의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부담.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현존의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적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심리사회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협약에 비추어 검토할 것;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보상 제도를 보장할 것; 합리적 조정의 거부가 장애에 기반한 차별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을 보고하는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1. 다중차별에 대한 대책

위원회가 우려 및 권고했듯,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다중/교차 차별에 대한 연구조사나 개념정의, 법제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다중/교차 차별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다중/교차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다중/교차 차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포함한 다중/교차 차별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정책 내에 여성, 아동, 이주, 성소수자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 아동, 이주 등 장애/비장애를 포

괄하는 영역 내에서 장애정책을 포함하는 방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과 다중/교차 차별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장애계에서도 지지하며 동참할 필요가 있다.

2.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로의 편입

최종견해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 체계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 하였지만, 개정법은 심리사회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던 조항을 폐지한 것이므로 이는 번역의 잘못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심리사회적 장애인도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포함하라'는 메시지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고 그 시행일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심리사회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른 장애영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구용역이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정부는 법시행 이후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통합에 관한 대책을 밝히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가능하도록 열어 두는 것과 함께 예산과 서비스의 양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없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패소비용 문제

패소비용의 부담은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용을 위축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장애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있어 불충분한 만큼,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차법 적용 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권철승, 기동민, 최혜영 의원 공동주최로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고, 장차법 개정안의 발의가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의 권고와 발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 움직임을 환영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포함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모두 감면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특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먼저 개선을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4. 합리적 조정의 거부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과적인 보고 및 조사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modation)'은 제공자와 장애인 간의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권리이며 그것이 과도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이다. 개별화된 권리가기 때문에 법에서 미리 그 내용을 정해 놓을 수 없으며, 접근성과는 다른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6호(2018)를 통해 합리적 조정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합리적인 조정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도입됐지만 이것은 오역에 가깝다. '정당한'이라는 개념은 당위성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권리는 단지 '편의제공'차원의 것이 아니다.

Accommodation은 '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합의, 협상, 조정'의 의미가 있으며 Reasonable accommodation에서는 후자의 의미이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이를 Adjustment(조정)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Accommodation은 일반적인 편의시설의 설치나 접근성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인에 맞추어 물리적 인 것 뿐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적절히 수정 또는 조정하라는 의미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나열하고 있고 해당 편의를 사전에 신청했지만 거부하는 경우에만 차별로 인정된다. 법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요구할 수 없으며, 건축연한이나 바닥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부의 정책에 의해 차별과 차별이 아닌 것이 결정되고 정부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해서만 차별이 시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장애차별시정은 굉장히 어렵고, 잘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적 권리로 보장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합리적 조정에 대한 이해가 협약체결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위원회의 지적처럼 반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권고처럼, 합리적 조정의 거부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장애인에게 유용하고 가까운 권리옹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차별 역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장애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에 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합리적 조정의 의미와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사회참여(이동, 노동, 교육)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 부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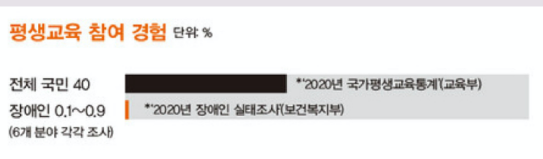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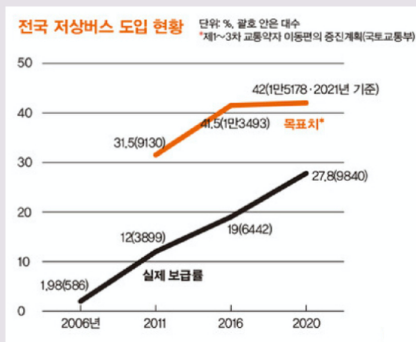
UN CRPD 한국 2,3차 최종건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사회참여(이동·노동·교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을 권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강조했던 장애인의 실태



*인포그래픽 출처: 한겨레21, "한눈에 보는 장애인의 방치된 현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48.html)

이동권

관련조항
: 제9조(접근성)

우려사항

- 2022년 교통에 있어 특별한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방해하는 불충분한 버스 번호, 노선, 탑승 안내 정보 제공.

권고사항

일반논평
제2호(2014)

-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노선을 포함한 정보와 탑승 안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되도록 보장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도록 공공장소와 환경을 개선한다.

이동권 :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분석

- 2022년 1월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불충분한 특별교통수단 문제에 관하여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광역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권고함.

이행 방향

- ‘일반논평 제2호’ 달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
-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적용 노선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버스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 광역이동 보장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권한 강화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감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특별교통수단 다양화

교육권

관련조항
: 제24조(교육)

우려사항

- 당사국의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와 꾸준한 특수학교 수 증가. 이로 인해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자폐, 지적, 심리 사회적 또는 중복 장애 아동의 수 증가.
- 불충분한 점자, 수화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 교육을 받은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 통합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
-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권고사항

일반논평
제4호(2016)

-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 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및 비 교육 인력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액세스와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조기구 및 학습 자료, 읽기쉬운자료, 의사소통 보조 장치, 보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보장한다.

교육권 :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분석

- 통합교육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특수교육학교와 학급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보고서에 언급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 통합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함.
-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됨.
- 생애주기에 따른 학령기 외 교육, 제도권 바깥의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은 아쉬움.

이행 방향

- '일반논평 제4호' 달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등 분리교육 유지 정책이 아닌, 통합 교육으로의 지향 및 국가 계획 수립
- 장애학생의 수요에 기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

노동권

관련조항 : 제27조
(노동 및 고용)

권고사항

일반논평 제8호(2022)

우려사항

- 차별적 법률이 지적 및/또는 정신적 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을 최저임금으로부터 배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보호작업장에서 개방 노동시장으로 옮기려는 명확한 계획이 부재함.

- 장애인을 개방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 및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권리, 특히 채용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편의 제공, 재훈련, 승진에 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도입할 것
-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에서 배제된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
- 장애인, 특히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개방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및 고용 및 통합적 노동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개방되고 통합적인 접근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개방노동시장 내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해 특별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노동권 :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분석

- 보호작업장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분명한 우려 인식이 확인됨.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생산성에 따른 임금 체계가 아니라 노동 그 자체에 따른 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 고용률이 낮은 장애유형과 함께 '탈시설 과정에 있는 장애인'을 언급한 것은, 시설 거주 경험에 따른 사회 통합의 어려움이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행 방향

- '일반논평 제8호' 달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
-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고, 최종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정당한 임금 보장
- 탈시설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일자리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강화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2.
(b)



감사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보장하라!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권리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2 부

무엇이 자발적 퇴소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권리(제19조)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에 대한 의견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2022년 9월 5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3차 병합심사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개편되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원칙으로의 대체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탈시설이행 강화를 언급하였다.

특히 탈시설과 관련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에서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시설화'와 '탈시설 전략에 대한 미약한 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종견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장애인 권리협약에 준하는 원칙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포함하고 이를 수행할 탈시설 전략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도록 긴급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리' : 자립생활의 기본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당사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의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었다.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는 등급제 폐지이전 조사와 내용적으로 변경된 사안이 없다. 장애로 인한 기능상실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준인 X1점수는 활동지원 등급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한다.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점수가 변화하기도 한다. 더욱이 등급제 개편이후 새로이 진행된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된 당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산정특례도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유일한 서비스이다.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의 전환된 지금도 여전히 당사자의 욕구가 수렴될 수 없거니와,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은 이를 측정하는 서비스 방식에 문제를 돌리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삭감된 시간을 보전하겠다는 방식으로 서비스 측정방식의 문제와 당사자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지 않는다. 제19조 권

리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에 기반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종합조사의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2. 무엇이 자발적 퇴소를 불가능하게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의 요구, 원가족 복귀, 시설폐쇄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당사자 의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할 경우 법적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설 퇴소 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해야한다고 법과 사업안내에는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동시에 '의사 능력'을 판단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예외조항이 모든 조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구조로는 시설 입소중인 당사자는 원가족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시설퇴소 의사를 내외부로 전할 방안이 없다. 또한 현재 '퇴소'는 타시설로의 전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폐쇄나 인권침해로 인한 특수한 사유로 인한 퇴소가 아닌 경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과 연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계하여 당사자의 탈시설을 촉구하는 '거주시설연계사업'(제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계획)은 시설의 의사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택된다. 시설과 센터 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매칭을 원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 재연계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시설에서 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를 이행할 근거는 없다. 실제 탈시설 정책을 추동하고 점검해야 할 서울시는 기존에 오랫동안 관계 맺어온 센터와의 연계를 중단한 시설의 의사에 대해 그저 침묵할 뿐이다.

퇴소 전 과정이 당사자가 아닌 시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원이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지원되는 구조이다. 당사자의 의사는 불공정하게도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만 용인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는 19조를 통해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9년 전에도 여전한 권고문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질문을 변경해야 한다. "시설을 나가고 싶나요" 에서 "왜 시설을 나갈 수 없나요?" 라고 말이다.

3. 탈시설 의지의 부재,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와 당사자의 의지를 대립하는 질문

주거, 생계급여,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일상으로 만나는 이들은 각 주소지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권리'로 인지하고 자기 삶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당사자의 일상과 연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권리'로 인지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2022년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첫 단추인 2023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으로 탈시설 단어를 삭제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삭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또한 기존

의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시범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를 통한 탈시설 본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2023년 일반회계로 6290억 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현재 한국정부가 탈시설 혹은 자립생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다잡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거주시설 등 수용시설화의 사회적 반성과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 더 나아가 지역사회 고립과 비시민화를 야기하는 시설사회에 대한 비판 없이 정책과 인식은 변화될 수 없다. 이번 유엔장애인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시설수용 종식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밝히고 탈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시설 수용인은 장애인거주시설 29,086(1539곳, 2021년)명, 정신장애인요양시설 8,828명(1,131곳, 2020년)이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숫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와야 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대할 것인지, 탈시설 전략 이행의 강화를 어떻게 제안하고 독립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덧붙여 장애여성 (6조) (a)에서 "장애관련 법률 및 정책에 젠더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젠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있어 장애관점이 부족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여아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탈시설에서 젠더관점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시설에서의 강제불임 시술, 사생활 권리 침해, 성교육 권리 보장 등이 오랫동안 침해되어온 만큼, 탈시설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구축되기 위해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행이 필수적이다.

[2 부] UN CRPD 한국 2, 3차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 방향
- 소수 장애인 이슈

이수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2 부

이수연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분석 및 이행방향

- 소수 장애인 이슈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 이수연



✓ 최종견해 - 일반원칙 및 의무 (제1-4조)

5.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 사항을 주목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의 개정된 장애의 정의를 포함한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여전히 협약에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고, 시청각장애 인이나 HIV/AIDS 감염 장애인을 포함한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6.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맞게 조정하도록 검토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 장애인을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장애인법연구회 병행보고서 - 제4조 관련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유형 및 등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장애는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시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시청각장애 그 자체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권고 제언>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와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행 방향

<최종견해>

6. (a)

- 장애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률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에 맞게 조정하도록 검토
-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 감염 장애인을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
- 모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

<이행 방향>

- 국내 법률 및 정책을 협약과 조화(harmonize)시키도록 인권적 관점(human rights model)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연구 실행 및 계획 마련
- 장애의 유형을 구분 짓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적 관점에 기반하여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

✓ 최종견해 -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제29조)

59.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 사항을 주목한다.

(b) 청각장애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을 포함하여 정치 및 공적생활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부족;

6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b) 선출된 대표를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을 포함한, 과소대표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를 가진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 장애인법연구회 병행보고서 - 제29조 관련 (1/2)

배제된 장애인들은 당사자단체의 결성과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다.

이는 다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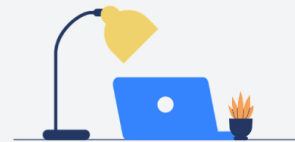
공적생활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는 당사자 단체의 결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제된 장애인단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따라서 배제된 장애인단체들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봉사 등을 통해서 운영되나, 지속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장애인법연구회 병행보고서 - 제29조 관련 (2/2)

<권고 제안>

- 대한민국 정부는 배제된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결성 여부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단체의 결성과 운영 및 지역·권역별 네트워크 마련을 지원하는 재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배제된 장애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당사자 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하라.



이행 방향

<최종견해>

60. (b)

- 선출된 대표를 비롯하여 청각장애인, 지적/심리사회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장애여성을 포함한, 과소대표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
- 입후보한 장애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를 가진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

<이행 방향>

- 장애인단체, 특히 소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 마련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
- 장애인단체가 활발히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제공
- 장애인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 시민사회 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맺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
- 관련 부처와 장애인단체 간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 장애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단체의 자문 등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

